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¹⁾

Children with Migration Background in Korea and Policy Challenges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언어 능력, 문화적 차이, 정체감 등에서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모의 이혼, 가족과의 별거, 새로운 가족 형성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돌봄·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 배경 아동이 미래 사회의 우수한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해 본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만

9,000~18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2020).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언어 능력, 문화적 차이, 정체감 등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주 과

1) 이 글은 신윤정, 이창원, 이규용, Li Hua, Nguyen Thi Tham, Maruja MB. Asis, Sachi Takahata, ... 장은숙.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신윤정, 오경석, 임지영. (2020).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정에서 동반되는 부모의 이혼, 가족과의 별거, 새로운 가족 형성에 따라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과 가족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주 배경 아동이 직면한 이주와 가족 변화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인종, 피부색, 국적·민족적·사회적 출신, 태생이나 기타 신분 등과 무관하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협약이 제시하는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주 배경 아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적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와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 배경 아동이 성장·발달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업들을 선형 연구와 면접 결과를 통해 분석한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돌봄·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 배경 아동이 미래 사회의 우수한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해 본다.

2. 이주 배경 아동의 현황

가.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

국제 사회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라는 개념은 국제기구들이 고유한 목적에 따라 다른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 개념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국가 내에서 출생한 이주민 자녀의 교육 관점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EU와 공동으로 이주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주 배경 인구’라는 개념을 썼다. 유엔은 아동의 인권 관점에서 ‘국제 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의 개념은 ‘모든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권리의 주체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주 배경’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한 기관은 2006년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10년 제주인권회의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본인의 이주 경험 또는 부모의 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

고, “다문화 청소년(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이주민(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및 그 자녀, 난민 자녀 등)을 포괄”한다고 제시하였다(송연숙, 2010).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주 배경 아동은 정부가 이주 배경 인구를 ‘재한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분하고 각 주무 부처를 설정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처 간의 경쟁을 막고, 이주 배경 인구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에서 생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1290호, 2012. 2. 1. 전부개정)을 개정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제18조)’을 신설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제18조 제1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라는 기준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는 부모 가운데 한쪽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 국적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합법 체류자’인 아동·청소년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차별 금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의 국제적 기준과 포괄적 의미에서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제18조 제2호는 국적이거나 체류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이주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로 이주’한 경우로 한정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간주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범주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제2조)의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인 중도 입국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인 탈북 청소년(제24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보았다. 이는 기존 ‘이주 아동’의 범주를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범주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의는 국제 이주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의 일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을 권리의 주체 및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신윤정 외(2018)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주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②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 입국 아동·청소년) ③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④ 재외국민 아동·청소년 ⑤ 외국 국적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⑥ 재한 외국인 아동·청소년 ⑦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 ⑧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⑨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각 유형의 아동·청소년은 국적(국민, 외국인), 체류 자격(합법, 비합법), 현재 체류국(출신지, 도착국, 경유국), 부모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이주 배경 아동의 규모

각 부처는 이주 배경 아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이주 배경 아동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데다 제한이 있어 이주 배경 아동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는 출입국 기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적이 있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자료에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귀화한 부모 및 외국인-한국인 부모

의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지만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가구의 이주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 자료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포함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 배경 아동과 관련한 전국 수준의 표본 자료로는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있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15세 미만 이주 배경 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주 배경 아동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9~24세 자녀에 대한 양적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어 이주 배경 아동의 전체 규모를 알기 어렵다.

정부 자료와 전국 표본 자료를 가지고 이주 배경 아동의 규모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사강(2018)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20만 1,333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신윤정 외(2018)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0~24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가 20만 7,985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3.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과 경험

신윤정 외(2018)는 이주 및 이주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9~18세 아동·청소년 5명과 이주 배경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4~7월 기간 동안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하여 중도 입국 청소년 5명, 결혼이민자 여성 5명, 탈북 이주민 여성 4명, 난민 여성 2명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다.²⁾ 면접 대상자 섭외는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에게 의뢰하였고,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과 관련한 요인을 아동의 이주 경험, 부모의 이주 경험, 가족 관계로 1차 코딩 하였으며, 2차 코딩으로 아동의 이주 경험과 관련해 한국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 한국 또래들과의 단절,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학습, 이중적 정체성, 부모의 이주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녀 혼자 보내는 영유아기,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부모의 익숙하지 못한 한국 생활, 친인척 지지의 부재,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는 입국 초기 불안정한 가족생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가정 내 방치된 아이들, 제한적

인 아버지 역할로 재분류하였다. 면접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이주 경험

한국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 아동의 이주 경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부터 배제당한다는 것이었다. 배제의 양상은 자발적인 배제와 비자발적인 배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배제는 아동 측면에서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한국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 공교육 체계로 편입하지 않는 것과 부모 측면에서 아동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인 배제로는 아동이나 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 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 또는 본국의 학교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다.

한국 또래들과의 단절: 한국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한국인 또래와 사귄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동기는 또래들과 어울려 교류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키워 본인이 세상의 일원임을 깨달아 가는 중요

2) 9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 9세 이상 그리고 부모의 부양하에 있는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다. 아동·청소년 면접 대상자들이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면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의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진 2인 1조로 면접에 참여하여 현장 노트를 기록하고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한 시기이다. 특히 이주 배경 아동은 한국인 또래와 교류하면서 한국인과는 다른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이주 배경 아동은 이러한 경험을 누릴 기회로부터 차단된다. 이주 배경 아동들이 또래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인식은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인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학습: 근로하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가족 동반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이 성인이 되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귀화 시험에 통과하여 한국 국적을 갖거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여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기에 치르는 귀화 시험은 준비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동이 그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들의 자격증 취득 목적이 기술을 연마하여 한국의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귀화 시험 혹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업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중적 정체성: 이주 배경 아동의 정체성 확립은 성장·발달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이주 배경 아동들은 한국인 혹은 본국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서 혼돈하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유아기에는 출신 국가나 인종과 무관하게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인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한국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출신 국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출신 국가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나. 부모의 이주 경험

자녀 혼자 보내는 영유아기: 가족의 이주는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입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모 일방이 입국하고, 자녀들이 맨 마지막에 입국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모두 떠난 후에 자녀들은 출신 국가에서 친인척에 의해 양육을 받았다.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은 한국으로 떠나 버린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영유아기에 부모와 떨어져 있던 아동들은 한국에서 부모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떨어져 생활했던 부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된다.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정서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받

거나 가정 내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아동의 불안정한 체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가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 혹은 모의 체류 자격이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에 의존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이주 배경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부모의 익숙하지 못한 한국 생활: 이주 배경 아동의 외국 출신 엄마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한국과 다른 배경인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 때문에 한국어가 미숙하고 교육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정신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이 자녀에게 투영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양육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이주 여성들이 출신 국가에서 배운 양육 기술을 자녀에게 적용하는 경우 출신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성장하는 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친인척 지지의 부재: 외국인 부모는 한국에서 친인척을 찾기가 어렵다. 친척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미약하여 한국인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다.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체류하는 것

이 어렵고 제한적인 기간만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친인척이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관계가 편하지 않고 자녀 양육을 위한 큰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족 관계

입국 초기 불안정한 가족생활: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 어렸을 때 헤어진 부모와 오랜 공백기를 거친 뒤 다시 만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의붓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모, 형제자매들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경우 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는 가난을 경험하는데 열악한 가족 환경은 아동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열악한 가족 환경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불화 속에서 행해지는 부모들의 폭력은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외국인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로 일한다. 대부분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으며, 근로하는 장소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근로시간도 야근 등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한부모 혹은 미혼모 외국인 여성들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

는 어려움과 함께 혼자서 오롯이 자녀를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 혹은 학대를 받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가정 내 방치된 아이들: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 안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외국 국적의 아동들은 방과 후 돌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아버지 역할: 이주 배경 아동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매우 어렸을 때 한국에 먼저 온 아버지들은 자녀가 어릴 때 함께 있어 주지 못해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와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경우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주 배경 아동 아버지의 부성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언어 능력, 문화적인 격차, 정체성 등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 배경을 갖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차별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주 배경 아동은 국제 이주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이는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

과 발달에 또 다른 과업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이주의 목적이 경제사회적인 이유인 만큼 이주를 경험하는 아동의 상당수는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즉 이주 배경 아동은 이주, 가족 변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라는 다층적인 과업에 직면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은 부모의 이주 혹은 (그리고) 자신의 이주 경험의 영향을 받아 언어 능력, 문화적 격차, 정체성 혼란, 사회적 관계망 부족에 노출되어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차별과 따돌림을 받는 것은 이주 배경 아동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불안한 생활을 보낸 아동들의 공포와 박해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은 국제결혼 가정, 부모의 이혼과 재혼, 재구성된 가족 내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지지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만나는 경험은 새롭게 전개되는 가족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을 준다. 국적이 다른 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어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부모와 헤어지는 것은 부모와의 분리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생애주기별로 이주 배경 아동이 직면한 성장 발달 과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0~6세)는 생애 초기 경험 시기로서 아동 발달의 연속성과 누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의 조기 언어 발달 및 보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언어 장애와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기(7~12세)는 가족 관계와 학교에서의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한국인 또래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교사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13~18세)에 만 14세 이하는 학습 지원, 만 15~17세는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사회적인 독립을 앞둔 만 18세는 진로 및 취업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이주 배경 아동은 본국과 다른 한국의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4.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 관련 권리와 정책 현황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은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

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아동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신윤정 외(2018)는 이주 아동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한 다양한 국제법을 검토하여 이주 아동에 대해 보장해야 할 권리로서 출생등록권, 체류권, 주거권, 모성보호, 보건의료, 보육권, 교육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 중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관련해서는 보육권과 보호·지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보육 및 돌봄 그리고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국제 인권 규범이 제시한 권리와 국내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보육권과 보육·돌봄 정책

1) 보육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은 당사국이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협약 제18조 2항은 당사국이 부모와 후견인에게 아동의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육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3항은 취업한 부모의 아동들이 아동 보육 서비스와 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일반논평 제6호를 통해 이주민 가족의 자녀들과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 가정의 자녀들은 보육을 포함한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보육 정책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는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2조 제1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3조 제3항).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권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0, p. 32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는 시·군·구에서 직접 외국인 아동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주 배경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아닌 시·군·구가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아동을 등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주 배경 아동은 시·군·구가 고유 식별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 외국인 부모들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나 시·군·구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이 갖출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절차는 식별번호와 시스템 등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주 배경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주 배경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12)가 실시한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맡길 곳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 아이들만 두고 출근한 경우도 20%로 조사되었다. 이경숙, 오경석(2017)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에서도 경기도 내 미취학 이주 아동 중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2.4%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68.2%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주 배경 아동이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 배경 아동들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되어 있거나 부모가 일하는 열악한 일터로 함께 가게 되어 이주 배경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2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의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의 면접 대상 중 3분의 1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입소를 거부당하는 이유는 체류 자체가 불안정한 점, 보육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 재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부모의 한국어가 서툰 경우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단체 보험 가입 등 서류 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와 이주 배경 아동이 함께 보육받는 것을 꺼리는 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경기도이주 아동보육네트워크, 아름다운 재단, 2020).

3) 돌봄 정책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p. 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보호(안전한 보호 및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 서비스(체험 활동, 공연)를 제공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주 배경 아동이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대상인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 배경 아동들은 원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용 아동 선정 기준에 “기타 지역 특성이나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포함되나 실제로 지자체로부터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입소를 허락받고 등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정원의외로 입소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아시아의 창(2020)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입소 거절을 당하는 주

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을 입소시키고 등록하며 관리한다. 아동을 등록할 때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데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이러한 절차를 하기가 어렵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시설에 입소시키기가 어렵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투거나 놀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이 없으면 전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불해야 하므로 센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또한 현장 학습으로 국내 여행을 가는 경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데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현장 학습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들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와 아동 보호 정책

1)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3조의 2에서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9조에서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

정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제26조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제10조에서 가정이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2) 아동 보호 정책

「아동복지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제3조 제1호)”으로 정의하며, 아동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제2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대상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4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상담, 대리 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선연적으로 볼 때 외국인 아동도 「아동복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이주 배경 아동들은 체류 자격의 불안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거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지만 수급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³⁾ 이는 학대 피해를 받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시설 보호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발표하였고, ‘2020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서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외국 국적의 아동의 경우 생계비를 기초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 국적, 미등록 상태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7조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분야 사업 안내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일 뿐 지방자치

단체나 기관의 이해에 따라 일관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2020).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나가며

앞으로 국제 이주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들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업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 협약이 천명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제 협약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당위적인 이유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잠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국격에 맞게 글로벌 사회에서 이주 배경 아동들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천명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와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이주 배경 아동은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장 시급한 문제인 이주 배경 아동들이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 배경 아동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 배경 아동의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 보호시설들이 관련 비정부기구(NGO) 단체들과 연계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집에 방치되어 있는 이주 배경 아동들에게 아동 돌봄 쿠폰 등을 제공하여 적절한 돌봄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이들을 등록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주 배경 아동과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2014년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2차 전문가 간담회 자료.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아름다운 재단. (2020).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2019 사업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 환경 실태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7). 학대 피해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주 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김사강. (2018). 이주 아동의 인권 현안: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 자료(2018. 4.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서.

송연숙. (2010).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 및 과제. 한국인권재단. 2010 제주인권회의.

신윤정, 오경석, 임지영. (2020).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이창원, 이규용, Li Hua, Nguyen Thi Tham, Maruja MB. Asis, Sachi Takahata,... 장은숙.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시아의 창. (2020). 미등록 이주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입소에 대한 제안. 내부 자료.

이경숙, 오경석.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

- 워크. (2020). 이주 아동 정책 브리프.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에서
 2022. 1. 15 인출.
- UN General Assembly.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3, p. 3.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c0.html> 에서
 2022. 1. 15 인출.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2005). General
 comment No. 6 (2005):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1 September 2005,
 CRC/GC/2005/6. <https://www.refworld.org/docid/42dd174b4.html>
 에서 2022. 1. 15 인출.

Children with Migration Background in Korea and Policy Challenges

Yoon-Jeong Sh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Korea develop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 children entering and staying in Korea is increasing. Children with a background of migration have different tasks compared to children who have not experienced migration in terms of language skills, cultural differences, and a sense of identity stemming from the experience of 'migration'. In addition, divorce of parents, separation from family, and formation of a new family that accompany the migration process make it difficult for children from migration backgrounds to grow into adults.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s and policies of children with a migration background, focusing on childcare and child protection,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t presents policy agendas necessary to enable children from migration backgrounds to fulfill their roles as excellent human resources in the global society.